

일본석유산업의 규제완화

일본

본의 10년 한시입법인 특석법(특정석유제품수입잠정조치법)이 지난 3월말 폐지되었다. 따라서, 비축의무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외국의 휘발유, 등유, 경유를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일본 석유업계는 본격적으로 국제화·자유화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1. 석유산업에 대한 규제

일본은 석유산업에 대해 아직도 여러가지로 규제하고 있다. 석유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제적 전략상품이기 때문에, 석유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의 일정비율을 국가규제하에 두어야 한다는 기본인식 때문이다.

지난 3월말 현재, 석유와 관계된 법률(규제)은 다음과 같다.

(1) 석유업법 (1962년 7월 시행)

「석유정제업등의 사업활동을 조정하므로써 석유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급확보를 도모해, 국민경제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제1조)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통상산업성장관에 의한 석유공급계획의 책정, 석유정제업 허가, 특정시설에 대한 신증설 등을 규제하고 있다.

(2) 석유비축법 (1976년 6월4일 시행)

석유위기와 같은 단기적·돌발적인 긴급사태에 대비해 규정된 법률로서, 민간비축과 국가비축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민간비축은 석유정제업자, 석유판매업자, 석유수입업자 모두 70일분을 비축해야 한다.

(3) 휘발유판매업법(揮販法) (1977년 5월 시행)

중소영세기업이 많은 휘발유판매업의 건전한 발달을 통해 휘발유의 안정공급과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휘발유판매업자의 등록, 주유소의 출입검사등을 규정하고 있다. 과당경쟁의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과당경쟁지역(지정지구)을 지정해서 주유소건설을 조정한다거나 품질조정을 지도하고 있다.

(4) 특정석유제품수입잠정조치법(특석법) (1986년 1월 시행)

일본과 미국·유럽의 무역마찰을 계기로 구미제국이 휘발유등 석유제품의 수입자유화를 요구하여 휘발유, 등유, 경유의 원활한 수입을 목적으로 한 10년 기한의 한시입법

일본의 특석법 폐지와 파장

이다. 수입업자는 등록제로 하고 ① 수입중단시 석유제품 생산·공급능력, ② 품질조정능력, ③ 비축능력 등 세가지 수입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외에 긴급대책으로 긴급시2法(「석유수급적정화법」, 「국민생활안정 긴급조치법」), 그리고 보안 운수, 환경등에 관한 규제(사회적규제)가 있으나, 석유산업에 관한 법률상의 주요규제는 이상 4가지이다.

2. 제1차 규제완화

일본의 석유산업은 오랫동안 이와 관련된 행정지도하에서 영업활동을 해 왔다. 그래서, 자립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과당경쟁 체질이 되어 경영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자유화시대를 맞아 석유공급의 불안정, 석유수급의 타이트화가 우려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심의회의(통산성장관 자문기관)에 석유산업기본문제검토위원회(基本檢)을 설치해 1990년대를 대비한 석유산업과 석유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基本檢은 1987년 6월 「1990년대를 대비한 석유산업, 석유정책에 대해」라는 보고서를 정리해 석유산업의 자율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평상시의 주요규제인 석유산업의 생산·판매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

제를 향후 5년안에 일정계획으로 과감히 완화」하도록提言했다.

오랫동안 석유업법체제하에 있던 석유업에 이것은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이 Action Program에 따라 석유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점차 폐지·완화되었다.

다음은 제1차 규제완화 내용이다

(1) 탄력적인 정제시설허가 (1987년 7월 실시)

- 정제시설의 신설을 제외한 시설허가에 대해서는 석유심의회의의 자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2) 휘발유 생산할당제 (PQ) 폐지 (1989년 3월 실시)

- 휘발유의 생산할당을 폐지하고 휘발유를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게 했다.

(3) 등유 재고지도 폐지 (1989년 9월 실시)

- 매년 9월에 등유재고량을 모든 회사 합계 600만KL로 하던 것을 폐지.

(4) 주유소 건설지도 및 轉籍 규칙 폐지 (1990년 3월 실시)

- 주유소를 신설할 경우, Scrap and Built 가 전제되고 또, 轉籍에 의해 주유소를 받아들일 경우 받아들이는 원대사측은 같은 수의 주유소를 없애야 한다는 규칙을 폐

지.

(5) 원유 처리지도 폐지 (1992년 3월 실시)

- 원유처리규모를 폐지해 각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적절한 생산·판매활동을 한다.

3. 국제적 가격체계 이행

· 이와 같이, 석유산업의 생산·판매활동에 대한 일련의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거품경제 붕괴, 엔고, 산업의空洞化라는 상황에서 경제활성화가 요구되어 규제완화논의가 더욱 활발해졌다.

석유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공급이 요구되었다. 즉, 국제화, 내외가격 차등의 문제로부터 경제의 규제완화라는 큰 흐름 가운데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제품가격의 실현과 가격체계의 국제화가 요구되었다.

석유심의회의의 석유정책기본문제 소위원회는 국제화를 감안한 일본 석유시장의 새로운 틀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검토를 하고 1994년 12월, 「향후 석유제품공급」에서 최종 보고를 정리했다.

이 보고서는 「안정공급과 효율적 공급의 균형으로 잡힌 석유제품공급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석유제품시장의 국제화와 국내유통의 효율화를 진척시킴과 동시에, 안정공급

일본의 특석법 폐지와 파장

및 환경대책·안전대책을 위한 제도정비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① 비축의무, 품질규제를 기본요건으로 하고, 특석법을 1996년 3월 기한으로 폐지하여 휘발유, 등유, 경유의 수입주체를 확대한다.
 - ② 휘발유판매업법의 주유소 등록제도는 존속되지만, 지정지구제도는 단계적으로 줄여 최종적으로는 1996년 10월을 기해 폐지한다.
 - ③ 주유소의 셀프화 여부에 대해서는 보안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
- 이 보고서는 ① 현재의 특석법은 휘발유등 석유제품수입주체를 석유정제회사로만 한정하고 있지만, 안정공급을 위해 비축의무 및 환경·안전에 관한 최소한의 품질관리 의무를 다하면 누구든지 수입가능하다. ② 주유소에 관한 지정지구제도는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1996년 3월 특석법이 폐지되고 석유제품수입주체가 확대됨에 따라 공평·공정한 경쟁원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자격요건으로서 비축제도와 품질관리제도의 재평가작업이 행해졌는데 이 결과도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었다.

최종보고서중 비축제도는 다음과 같다.

- ① 연간 1만kl 미만의 소량 수입업자에 대해서도 비축의무를 부과

한다.

- ② 제품수입에 대해서도 해당제품에 의한 비축을 기본으로 한다.
 - ③ 「이전 12개월 실적방식」에 의해 매월 비축의무량을 롤링한다.
- 또한 품질관리제도는 다음과 같다.
- 환경, 안전등의 차원에서 휘발유 판매업법에 의한 규제, 휘발유무연화에 관한 행정지도, 경유 유통분에 관한 행정지도등의 현행 품질기준에 기초하고 있다. 단 휘발유의 유통, 벤젠은 규제한다. 이들 모두 품질검사 시스템, 벌칙규정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새롭게 규제를 시행한다.

4. 제2차 규제완화

이상의 보고서 내용으로 특석법 폐지, 석유비축법개정, 휘판법개정 등의 석유관련정비법안 (정식명칭 「석유제품의 안정적인 공급확보를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안」) 이 1995년 2월 21일 각의에서 결정, 국회에 상정되었다.

그리고, 휘발유판매업법(휘판법)을 개정한 「휘발유등의 품질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 1995년 4월14일 衆參 양원에서 통과·정식으로 성립되었다.

이 법률은, 휘판법의 등록제를 기본으로 하고 휘발유, 등유, 경유의

품질강제가격을 정해 그 품질유지를 목적으로 한 법률로서 수입업자·정제업자와 최종판매업자에 대해 「자기관리책임」과 품질관리책임을 요구하고, 무등록영업이나 품질의 확인업무위반 그리고 비규격제품판매 등에 대해 엄격한 벌칙을 정하고 있다.

특석법의 폐지와 그에 따른 법개정은 석유업계에서 제2차 규제완화라고 할 수 있다.

5. 맺는말

이렇게 석유산업은 오랫동안 통제시대에서 규제완화를 거쳐 자유화시대(완전하지는 않지만)로 이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획기적인 전환에도 불구하고 석유에 대한 당국의 인식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석유심의회는 석유에 대한 기본인식은 통제시대나, 그리고 특석법폐지에 따른 자유화시대나 「일본의 입장에서 석유는 경제안전보장상 가장 중요한 물자이고 그 안정공급을 도모하는 상태에서 강인한 석유산업이 국내에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일관되어 있다. 여하튼 특석법이 폐지되면 수입제품을 취급하는 다른 업종의 시장참여 기회가 늘어나고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 석유문화, 1996년 3월호, 석유협회 조사과역 >